

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 관련

| 구 분 | 세 분 | 가산 점수 및 부가 점수 | 가산시점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|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2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4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.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6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| 전 시험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~10% | 매과목 40%이상 득점시 부여 |

- ※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- ※ 필기시험 가점 적용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가 응시직렬의 가산대상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에는 이를 합산한다.
- ※ 자격증소지 가점의 경우 공사업무의 해당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며, 2개 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.